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
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83
----------	-----

2019. 10. 25. (금)
교 육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: 충청북도교육감

나. 제출일자: 2019년 10월 8일

다. 회부일자: 2019년 10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2019년 10월 17일

(제37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양개석)

가. 제안이유

-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청소년 지속적인 감소로 산업체 특별학급을 희망하는 학생이 없고, 희망 학생이 있더라도 방송통신고등학교로의 수용이 가능함
- 2016. 3. 1.자 산업체 특별학급 폐급 후 3년 간 특별학급 설치에 대한 요구가 없어 「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조례를 폐지함

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최경분)

- 본 조례는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2조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·고등학교에 설치하는 특별학급과 산업체가 설립·경영하는 산업체 부설 중·고등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2년도에 제정하였음

※ 2012년도 이전에는 「산업체의 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 기준령」을 근거로 특별학급 또는 부설 중·고등학교를 운영

- 충북인터넷고등학교(현, 충북상업정보고등학교)에 설치되어 있던 특별학급이 폐급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특별학급 입학 수요가 없고, 근로 청소년의 경우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, 본 조례가 폐지되어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 산업체의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등의 설치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초·중등교육법[시행 2019. 6. 19.] [법률 제15961호, 2018. 12. 18., 일부개정]

제52조(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등) ①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이 중학교·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·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.

② 하나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입학を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산업체는 희망하는 청소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(이하 “산업체 부설 중·고등학교“라 한다)를 설립·경영할 수 있다.

③ 둘 이상의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중에서 입학을 희망하는 인원이 매년 2학급 이상을 편성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둘 이상의 산업체가 공동으로 하나의 산업체 부설 중·고등학교를 설립·경영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·고등학교의 설립 기준과 입학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·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
⑥ 지방자치단체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 부설 중·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비 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